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송미령<br>(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6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5~’29)’에 맞추어 개편 및 목표치를 수정·보완하고, 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항목을 신설·보완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제5차 기본계획의 전략 변화에 따른 서비스 항목 부문 보완
  - 4대 부문(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에서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으로 조정
- ‘시설 여부’를 점검하는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은 ‘접근성’지표로 개선
  - (노인복지) 방문요양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여부를 파악했던 지표를 노인복지서비스 기관까지 소요시간(접근성 지표)으로 변경
  - (평생교육)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시설 여부를 파악했던 지표를 평생교육기관까지 소요시간(접근성 지표)으로 변경
- 농어촌에서 부족한 생활 서비스(세탁, 이미용 등), 식료품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측정하는 항목 신설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항목 분리

-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해 경제활동 부문의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을 고용서비스로 개편
- 통계 정확도가 떨어져 신뢰도가 낮은 항목(방법설비, 생활폐기물) 제외
  - 생활폐기물(기존 : 생활·영농) 항목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영농폐기물로 변경
- 점검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은 ‘슬레이트 주택’으로 항목 변경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관련 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비스 부문은 “1호”, “2호”를 “3호”로 통합·변경하고,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전략에 따른 순서로 한다.

### 1호. 경제활동 부문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항목을 삭제하고 고용서비스 항목을 접근성  
지표로 신설한다.

### 2호. 주거여건 부문

주택 항목을 슬레이트주택으로 변경한다.

생활폐기물 항목은 삭제하고 영농폐기물 항목으로 변경한다.

난방 항목에 ‘배관망 방식 등을’ 문구를 추가한다.

방범설비 항목은 삭제한다.

### 3호. 공공·생활서비스 부문

영유아보육·교육 항목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항목을 분리하고, 접근성 제고 지표임을 명시한다.

평생교육 항목은 접근성 지표로 변경한다.

문화 항목은 점검 시설에 영화상영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을 추가한다.

노인복지 항목의 점검 시설을 노인복지관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변경한다.

도서관 항목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한다.

생활서비스 항목과 식료품 항목을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                                                                                                                                                         | 개정안                       |              |                                                                                                                                                                                                      |
|---------------------------|--------------|---------------------------------------------------------------------------------------------------------------------------------------------------------|---------------------------|--------------|------------------------------------------------------------------------------------------------------------------------------------------------------------------------------------------------------|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              |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              |                                                                                                                                                                                                      |
| (제2조 관련)                  |              |                                                                                                                                                         | (제2조 관련)                  |              |                                                                                                                                                                                                      |
| 부문                        | 서비스 항목       | 목표치                                                                                                                                                     | 부문                        | 서비스 항목       | 목표치                                                                                                                                                                                                  |
| 1. 보건·복지                  | 가. 진료        |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여건 개선                                                                                            | 1. 경제 활동                  | 고용 서비스       |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나. 응급 의료     |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 2. 주거 여건                  | 가. 슬레이트 주택   |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한정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률 제고                                                                                                                                                       |
|                           | 다. 영유아 보육·교육 |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                           | 나. 상수도       | 상수도 보급률 제고                                                                                                                                                                                           |
|                           | 라. 노인 복지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제고                                                                        |                           | 다. 하수도       | 하수도 보급률 제고                                                                                                                                                                                           |
| 2. 교육·문화                  | 가. 초·중등 교육   | 1)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초·중등학교의 육성<br>2)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통학수단의 제공                                                                                        |                           | 라. 영농 폐기물    | 영농폐기물의 수집·수거 시설 확충                                                                                                                                                                                   |
|                           | 나. 평생 교육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제고                                                                 |                           | 마. 난방        | 1)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br>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엘피지(LPG) 저장탱크, 배관망 방식 등을 활용한 가스 보급 확대                                                                                                                     |
|                           | 다. 문화        |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이하 “지방문화원”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br>2) 공연장 및 지방문화원에서 관람·이용할 수 있는 공연 및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                           | 바. 대중 교통     |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노선버스(이하 “노선버스”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 제고<br>2)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도입<br>3)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제고 |
|                           | 라. 도서관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                           | 사. 경찰 순찰     | 순찰 장소·시간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요청을 반영한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 실시                                                                                                                                                          |
|                           | 마. 체육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                           | 아. 소방 출동     | 화재 발생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로 정해진 목표시간 이내에 화재 발생장소에 도착하는 비율 제고                                                                                                                                              |
| 3. 정주(定住)여건               | 가. 주택        |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br>2)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한정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률 제고                                     | 3. 공공·생활 서비스              | 가. 진료        |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여건 개선                                                                                                                                         |
|                           |              |                                                                                                                                                         |                           | 나. 응급 의료     |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
|                           |              |                                                                                                                                                         |                           | 다. 영유아 보육·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

| 현행          |                                                                                                                   |                                                                                                                                                                                                                                         | 개정안                               |                                                                                                  |                                                                                               |                                                                                                                                                                               |                                                                                        |
|-------------|-------------------------------------------------------------------------------------------------------------------|-----------------------------------------------------------------------------------------------------------------------------------------------------------------------------------------------------------------------------------------|-----------------------------------|--------------------------------------------------------------------------------------------------|-----------------------------------------------------------------------------------------------|-------------------------------------------------------------------------------------------------------------------------------------------------------------------------------|----------------------------------------------------------------------------------------|
| 4. 경제<br>활동 | 나. 상수<br>도                                                                                                        | 상수도 보급률 제고                                                                                                                                                                                                                              | 라. 초등<br>교육                       | 1)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접근성 제고<br>2)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초등학교의 육성<br>3) 통학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생에<br>대한 적절한 통학수단의 제공 |                                                                                               |                                                                                                                                                                               |                                                                                        |
|             | 다. 하수<br>도                                                                                                        | 하수도 보급률 제고                                                                                                                                                                                                                              |                                   | 마. 중등<br>교육                                                                                      | 1) 농어촌 지역 중학교에 대한 접근성 제고<br>2)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중학교의 육성<br>3) 통학지원이 필요한 중학생에 대한 적절한 통<br>학수단의 제공 |                                                                                                                                                                               |                                                                                        |
|             | 라. 난방                                                                                                             | 1)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br>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br>역에 대한 엘피지(LPG) 소형저<br>장탱크 등을 활용한 가스 보급<br>확대                                                                                                                                                   |                                   |                                                                                                  | 바. 평생<br>교육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br>평생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1조의3에<br>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br>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br>접근성 제고                                                                              |                                                                                        |
|             | 마. 대중<br>교통                                                                                                       |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br>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br>에 따른 노선버스(이하 “노선버<br>스”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 제고<br>2)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br>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br>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br>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br>도입<br>3)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안전<br>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br>선의 이용 편의성 제고 |                                   | 사. 문화                                                                                            |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br>장(문화예술회관 및 소공연장) 및<br>「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0항에 따<br>른 영화상영관, 「지역문화진흥법 시<br>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생활문화<br>센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br>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 문화의<br>집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                                                                                        |
|             | 바. 생활<br>폐기<br>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br>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장소·<br>설비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                                   |                                                                                                  |                                                                                               | 아. 노인<br>복지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br>따른 노인복지관 또는 같은 법 제38<br>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br>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사. 방법<br>설비                                                                                                       |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방법용<br>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br>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br>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br>한다)의 설치율 제고                                                                                                                                          |                                   |                                                                                                  | 자. 도서관                                                                                        |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 제외)<br>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대한 접근 편의성<br>제고                                   |
|             | 아. 경찰<br>순찰                                                                                                       | 순찰 장소·시간 등에 대해 지역<br>주민의 요청을 반영한 탄력적인<br>방식의 순찰 실시                                                                                                                                                                                      |                                   | 차. 체육<br>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br>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br>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                                                                                        |
| 자. 소방<br>출동 | 화재 발생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br>지역별로 정해진 목표시간 이내에<br>화재 발생장소에 도착하는 비율 제고                                                     | 카. 생활<br>서비스                                                                                                                                                                                                                            | 세탁, 이미용, 목욕 등 생활서비스에<br>대한 접근성 제고 |                                                                                                  |                                                                                               |                                                                                                                                                                               |                                                                                        |
| 4. 경제<br>활동 | 창업·<br>취업·관<br>련·컨설팅·<br>교육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br>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br>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br>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프<br>로그램의 이용 가능성 제고<br>2)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br>프로그램의 확충                                                                                                          | 타. 식료품                            | 식료품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1 - 1518 |